

『민방위 경보시설 유지보수 용역』 유지보수 용역 계약서

계 약 서

예천군(이하 "발주처"라 한다)와 유지보수용역 계약업체(이하 "계약자"라 한다(는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시 모든 조항을 엄수하고 성실히 수행한다.

제 1조(목적)

본 계약서는 발주처인 예천군이 보유하고 있는 민방위경보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전 정기점검과 장애발생시 신속하고 완벽한 대응 조치를 취하여 시스템이 항시 최적의 상태로 유지·운영될 수 있도록 발주처의 유지보수 계획에 따라 계약자가 유지보수에 수행할 업무 등 이에 수반되는 제반 사항을 규정한다.

제 2조(용어의 정의)

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에 정의하는 바에 의한다.

가. 민방위경보시설 : 민방위 사태 및 재난이 발생할 경우 그 상황을 시민에게 신속하게 알리기 위한 시스템 일체를 말한다.

나. 유지보수 : 민방위시스템의 정상운영을 위한 예방 정기(정밀)점검과 장애 발생시

복구 조치 등의 제반 활동을 말한다. 다. 유지보수료 : 이 계약에 관한 과업내용 이행을 위한 제반활동과 관련하여 본 계약

에 의하여 지급되는 비용(부가세 포함)을 말한다. 라. 장 애 : 민방위경보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모든 상태를 말한다.

마. 설치장소 : 민방위경보시설이 설치 운영되고 있는 장소를 말한다.

제 3조(유지보수 계약자격 및 대상)

본 계약에 따른 유지보수 계약자격과 대상은 다음과 같다.

가. 유지보수 계약자격요건

- 정보통신공사업과 소프트웨어사업자(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)을 등록한 업체

- 최근 5년간 민방위경보시설 납품·설치 또는 유지관 살적 2천만원 이상 인 업체

CO TO

나. 유지보수 대상

| 구 분 | 개수 | 위 치 | 규 격 | া ন |
|-----|----|------------|-------|-----|
| 대형 | 1 | 용궁면 | 2400W | |
| 지능형 | 3 | 예천군청 외 2개소 | 1600W | |

제 4조(유지보수의 범위)

- 가. 계약자는 민방위경보시설의 정상운영을 위해 설치장소를 직접방문하여 정기점검을 실 시하여야 하며 매월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.
- 나. 계약자는 정기점검 및 고장수리를 실시하고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, "발주처:에게 유지 보수료 신청 시에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.
- 다. 장애수리시 계약자는 발주처로부터 장애통보를 받은 즉시 수리 복구하여야 하며 최대 48시간 이내 수리 복구하여야 한다. 다만 중대 고장 발생시는 계약자의 예비품으로 대체 후 수리에 임해야 하낟.
- 라. 계약자는 발주처가 통보한 고장수리의뢰서 『별첨1』에 의해서 유지보수하고, 수리완 료확인시 『별첨2』를 제출한다.
 - 단, 경보시설의 오 취명, 미 취명 사고 발생시 즉시 응급복구조치와 함꼐 원인분석을 실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한다.
- 마. 계약자는 계약 후 15일 이내에 용역대상에 대한 점검 계획서(점검일지 포함)와 전담 유지보수요원을 통보하고 발주처의 작업지시에 따라야 한다.
- 바. 민방위경보시설의 업그레이드 또는 환경 기능조정 등 필요한 경우 지원하여야 한다.
- 사. 경보시설(H/W 및 S/W)의 전반적인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련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.

제 5조(유지보수 장소)

유지보수를 위한 제반업무는 제 3조 "나"의 유지보수 대상에서 실시한다. 다만, 유지보수 상 필요에 의해 다른 장소로 이동할 경우 계약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.

제 6조(유지보수 체제)

- 가. 발주처와 계약자 상호간은 본 계약에 의한 유지보수용역의 모든 사항을 수행함에 있 어 365일 상시 복구체계(비상연락포함)를 확립하여야 한다.
- 나. 계약자는 민방위경보시설 고장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복구 조치를 하여 계약자의 경보업무(발령)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.

제 7조(정기점검 실시)

- 가. 계약자는 민방위경보시설 고장예방을 위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.
- 나. 정기점검 횟수는 제4조 "가"에 정의한 횟수이며 특별점검은 계약자가 요구하는 경 우에 실시하고 정기점검 기록표 『별첨3』를 제출한다.

제 8조(특별점검)

- 가. 계약자가 시스템의 증설·성능보강, 시스템 이설·변경, 미취명·오취명, 정기취명 등에 따른 고장 발생이 예견되는 경우이거나 장애 발생시 계약자의 요구에 의하여 수 시로 점검하는 경우를 말한다.
- 나, 계약자는 특별점검 완료 후 발주처에게 점검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, 점검 결과 경보 장비 및 시스템 상에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시정조치하고 그 조치결과를 발 주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 9조(기술 등의 지원)

- 가. 계약자는 경보시설 운영과 유지보수 등에 대한 발추처의 기술지원 요구 시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.
- 나.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민방위경보시설 및 주변기기의 증설 및 이설 또는 시스템 변경 등에 따른 발주처의 기술지원 요구가 있을 경우 계약자는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.
- 다. 원인불명의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원인규명 및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, 이에 따른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여 문제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려야 한다.

제 10조(장비의 수리 및 예비품 확보)

- 가. 계약자는 민방위경보단말에 대해 고장 발생 시 자부담으로 무상수리여야 한다. 다만, 구성장비 중 위성수신기, 단말 제어부, 소모품 일체는 장비 제작사의 수리 불가로 장비전체를 교체해야 할 경우 계약자는 수리불가 사유와 교체비용을 제출하고 노무비 등을 제외한 최저 실비로 교체하여야 한다.
- 나. 계약자는 고장 및 장애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해 장애복구에 필요한 주요 예비품을 확보하여야 한다.

제 11조(장애 복구 조치 및 장애조치 시간산정)

- 가. 사업수행자는 발주처로부터 장애발생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가능한 신속히 현장에 도착하여야 하며, 장애복구는 현장 도착 즉시 원인을 파악 하여야 하며, 사업수행자가가능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복구 조치하여야 한다.
- 나. 고장복구 후 48시간 이내에 동일유형의 고장이 재 발생 하는 경우, 장애조치 시간 산정은 최초 장애발생 통보 시부터 시작한다.

제 12조(계약금액 및 기간)

본 계약의 유지보수 용역비는 금 10,800,000원 (금 일천팔십만원)(부가세포함)으로 한다. 본 계약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~ 2022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. (※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)

제 13조(유지보수료 청구·지급)

- 가. 계약자는 계약서의 유지보수료를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청구하여야 하며, 이의 불 이행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- 나, 계약자는 발주처의 계약내용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자의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에 유지보수료를 정산하여야 한다. 단, 유지보수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는 일할 계산 지급한다.

제 14조(계약보증금의 납부, 귀속)

- 가. 계약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으로 총 계약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. 단,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다.
- 나. 계약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발주처에게 자동으로 귀속된다.

제 15조(계약내용의 조정)

발주처와 계약자는 유지보수대상 물량 및 유지보수 내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본 계약서 내용을 기본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외에는 별도 합의서나 변경계약서를 작성 서명, 날인함으로서 계약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합의서 또는 변경계약서 내 용이 본 계약과 상이하거나 상출할 경우에는 합의서 또는 변경 계약서가 우선한다.

제 16조(계약의 해지)

- 가. 발주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 - (1) 계약자가 본 계약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발주처가 인정하는 경우 단, 계약자가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철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계약자에게 있다.
 - (2) 제 17조에 정한 고장복구조치 지연이 월 2회 이상 발생한 경우
 - (3) 제 17조에 정한 정기점검 및 고장복구 지연으로 인해 민방위시스템의 정상적 운 영이 불가능하거나 중대한 영향이 발생(또는 우려)될 경우
 - (4) 계약자가 본 계약서를 이행하지 않거나, 계약상 중대한 의무이행 조항을 위반한 경우
- 나. 이외에 발주처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, 계약해지 예정일 30일 전까지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 17조(지체상금)

제4조 다항과 같이 제한시간 내에 장애 복구를 완료하지 못했을 경우 시간산정은 최초 고 장발생 통보 시부터 가산하며, 지체상금 계산은 『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게 관한 법률 시행령』에 따른다.

제 18조(손해배상)

계약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처의 재산(임차포함)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발주처에게 배상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손해발생에 대한 계약자의 고의 및 과실이 없을 경우 입증책임은 계약자가 부담한다. 손해액 산정은 피해 해당물품에 대해 해당장비의 제조업체에서 견적하는 금액 또는 물품으로 한다.

제 19조(면책 및 안전사항)

- 가.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시 이로 인해 발생되는 발주처의 손해는 계약자가 책임 지지 않는다. 단, 발주처는 시스템 복구비용을 부당하고 계약자는 기술지원으로 정상 복구시키며, 그 범위는 사전에 합의하여 결정한다.
 - (1) 지진, 홍수 등 천재지변의 의한 경우
 - (2) 전시사태와 같은 국가비상사태의 경우
 - (3) 계약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를 "발주처"가 인정한 경우

제 20조(보안관리 및 책임)

- 가. 계약자는 민방위경보시설의 설치장소 출입 시 설치기관 담당자나 발주처가 요구하는 보안사항 및 점검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- 나. 계약자는 용역 수행 중 득한 기밀사항과 각종 시스템 구성, 통신망 구성 등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고 해당 자료를 타 기관에 제공할 때에는 반드시 발주처의 승인 을 득하여야 한다.
- 다. 계약자는 유지보수용역 제반업무를 처리하는 모든 인원에 대하여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종사자의 신원 증명 등의 제출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.
- 라. 계약자는 민방위경보시설이나 설치장소에서 직접, 간접으로 취득한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 보안사항의 누설로 인한 문제 발생시 계약자는 형사상, 민사상 책임을 진다.

제 21조(분쟁의 해결)

- 가. 본 계약서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규정에 의하고, 규정에 없으면 발주처와 계약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.
- 나, 본 계약사항의 해석상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. 다만 계약자가 입증자료를 제시한 경우에는 계약자의 해석에 따를 수 있다.
- 다.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을 경우 관할 법원은 발주처의 소재지를 관합하는 법원 으로 한다.

제 22조(계약서)

본 계약의 내용을 증빙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"발주처"와 "유지용역 보수 업체"가 서명 날인후 각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.

2023 년 01 월 일

"발주처" 주 소 :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🐧

기관명 : 예천군청 기관장 : 예천군수

"계약자" 주 소 :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5, 2층 216호(율곡테크노벨리)

회사명 : 이디에스 주식회사

대표자 : 이 종 필

[별첨 1]

고장수리 의뢰서

- 1. 장 비 명:
- 2. 규격 및 수량:
- 3. 발생일자:
- 4. 고장내역:

상기와 같은 고장으로 수리 의뢰하

2023년 월 일

의뢰자 소속:

성명 :

수리자 소속:

성명 :

[별첨 2]

수리완료 확인서

- 1. 장 비 명:
- 2. 규격 및 수량:
- 3. 수리의뢰일:
- 4. 고장내역:
- 5. 수리내역:
- 6. 수리완료일 :





상기와 같이 수리 완료하였음.

2023 년 월 일

수리자 소속:

성명 :

확인자 소속:

성명 :